

불법체류 외국인

자진출국 제도



1. 불법체류 외국인(범칙금 면제 및 입국금지 면제)

- **대상자** : 대책 시행일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
 - **신고 기간 및 장소** : 2019. 12. 11. ~ 2020. 6. 30.,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
 - **제출서류** : 여권, 자진출국신고서, 출국항공권
 - **자진출국확인서 수령** : 출국 당일 '자진출국확인서' 수령(공항만 출입국관서) 후 출국
 - **비자신청** : 일정기간(3~6개월) 경과 후 ①자진출국확인서 ②본국범죄경력증명서 ③결핵검진확인서(진단서)를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, 단기방문(C-3, 90일, 단수) 비자 신청
- ➔ 단기방문(C-3, 90일, 단수) 자격으로 재입국, 체류지 신고 및 위법사실 없이 출국한 경우 단기방문(C-3, 90일, 12개월, 복수) 비자 발급 가능(C-3 단수비자 발급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서만 허용)
- ※ 2020. 7. 1. 이후 자진출국 신고시 원 범칙금액의 30% 부과, 2020. 10. 1. 이후 자진출국 신고시 원 범칙금액의 50% 부과
 - ※ C-3(단수)로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 체류지 신고. 단 14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 신고(C-3 복수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 신고)
 - ※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허가(E-9), 유학(D-2), 연수(D-4), 투자(D-8) 등 비자발급 가능

2. 농·어촌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

(고용주·외국인 범칙금 면제 및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)

- **대상자** : 대책 시행일 현재 농·어업 계절근로 분야에서 불법체류·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및 고용주
- **신고 기간 및 장소** : 2019. 12. 11. ~ 2020. 1. 15.,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
- **제출서류** : 고용주와 함께 출석하여 외국인은 여권, 자진출국신고서, 출국항공권 제출, 고용주는 고용확인서, 지자체 발급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확인서 제출
- **자진출국확인서 수령** : 출국 당일 '계절근로자용 자진출국확인서' 수령(공항만 출입국관서) 후 출국
- **비자신청** : 지자체에서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→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→ 재외공관에서 단기계절근로(C-4) 또는 장기계절근로(E-8) 사증 발급